

종 자 산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이유

종자 무병화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때 마련하고, 벼싯산업기사를 종자관리사 자격기준에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자산업법 제19119호 '23.12.27. 개정, '23.12.28 시행(일부조항 '24.6.28)

2. 주요내용

종자 무병화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때 마련하고, 벼싯산업기사를 종자관리사 자격기준에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자산업법 제19119호 '23.12.27. 개정, '23.12.28 시행(일부조항 '24.6.28)

2. 주요내용

가. 종자관리사 자격기준에 자격증 추가(안 제12조제4의5호)

2019년 국가기술자격에 벼싯산업기사가 개설되었고, 2021년 적극행정위원회 승인을 받아 법령개정 전까지 종자관리사 자격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규정에 추가할 필요

나.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실시(안 제12조의2)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2년마다 6시간의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관련 조항 신설

다. 종자의 무병화인증 대상 종자 범위 규정(안 제12조의3)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을 사과·배·포도·복

숭아·감귤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로 규정
라. 종자업·육묘업 등록 기준 개선(안 제15조 별표5, 제15조의2 별표5의 2)

버섯 종자업 등록의 경우 성형된 종균을 다시 포장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
한해 장비기준을 면제(별표5 개정)하고, 육묘업 등록 대상인 채소·화훼
작물의 경우 육묘 시기, 재배지의 기후적 여건 등에 따라 난방기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사과 양과는 대부분 노지(露地)에서 육묘가 이루어지는
상황임에 따라 현재보다 완화된 시설기준으로 개정(별표5의2 개정)

마. 행정업무 권한의 위임·위탁 추가(안 제18조)

- 1) 산림청장에게 종자의 수입신고 수리 권한을 추가하고 일부 인용하는
조항 수정(안 제18조제1항)
- 2) 국립종자원장에게 종자의 수입신고 수리,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등 업무 권한을 추가하고 일부 인용하는 조항 수정(안 제18조제2항)
- 3) 무병화인증지정기관에 인증업무와 수수료 징수 권한을 위탁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18조제6항)

바.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화(안 제20조 별표6)

종자산업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각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 6을 법에 맞춰 현행화(별표 6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버섯 종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종자관리사 정기교육)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림청
2. 국립종자원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②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대상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종자관리사 중 종자업자 또는 관련기관·법인에 취업하여 종자 관리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의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목 등 세부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2조의3(무병화인증 대상)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 대상 작
물의 종자(묘목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수(사과·배·포도·복숭아 및 감귤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

제18조제1항제15호 중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
다.

23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 수입 신고의 수리

36. 법 제50조제2항제2호부터 제2호의3까지에 따른 청문

제18조제2항제18호 중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의2부터 제23호의9까지, 제25호의2, 제25호의3 및 제2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

23의3.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취소, 표시의 제거·사용
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판매·보급의 정지·금지 또는 회수·폐기
명령

23의4. 법 제36조의5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의 지정,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 갱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3의5. 법 제36조의5제8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무병화인증 심사결과

에 대한 보고의 수리

23의6.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3의7.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3의8. 법 제36조의8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이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는 지 점검·조사

23의9. 법 제36조의8제2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 점검·조사

25의2. 제39조의4에 따른 종자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5의3.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종자이력관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26의3. 법 제40조의2에 따른 종자 수입 신고의 수리

38. 법 제50조제2항제2호부터 제2호의3까지에 따른 청문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무병화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탁한다.

1.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병화인증

2. 법 제51조제1항제4의2호부터 제4의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병화인증 신청 및 무병화인증 갱신 수수료 징수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의 장비의 기호(○)란 기호(○)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성형 버섯종균을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환경조절장치

가) 환풍기

나) 난방기(난방기가 필요한 작물만 해당한다)

다) 관수장치

별표 5의2 제2호가목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지 (파·양 파만 해 당한다)	1) 면적: 990m ² 이상 2) 관수장치를 갖출 것
----------------------------	--

별표 6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이상 위반
가. 삭제						
나.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	100	300	500	700	1,000
다. 삭제						
라. 법 제3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	<u>100</u>	<u>300</u>	<u>500</u>	<u>700</u>	<u>1,000</u>
마.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	법 제56조제1항제2호	<u>100</u>	<u>300</u>	<u>500</u>	<u>700</u>	<u>1,000</u>

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의3					
바.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4	100	300	500	700	1,000
사. 제3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5	100	300	500	700	1,000
아.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및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3호	100	300	500	700	1,000
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4호	100	300	500	700	1,000
차. 법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5호	100	300	500	700	1,000
카. 법 제36조의5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무병화 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400	500
타.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판매자의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400	500
파. 법 제3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호	100	150	200	250	300
하.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	법 제56조제3항제2호	100	150	200	250	300

를 위반하여 무병화 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4항제1호	10	30	50	70	100
거.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4항제2호	10	30	50	70	100
너.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6조제4항제3호	10	30	50	70	100
다.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및 묘를 진열·보관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 제2호마
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자관리사 정기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록한 종자관리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4의2] <신 설>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세부사항(제12조의2 관련)

1. 교육 이수

가. 교육 주기 : 2년 주기 1회

1) 1년의 주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시행령 시행일인 2023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이수 대상자는 최초 교육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3) 시행령 시행일인 2023년 12월 28일 이후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신규 이수 대상자는 대상자가 된 연도 다음 해부터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이수 시간 : 6시간 이상

다. 교육 이수 :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종자관리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라. 결과 통보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교육 완료 1개월 이내에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강사 수당 등을 포함)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2.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상세내용
종자산업법	2	종자산업법, 종자검사요령 등
종자검사	2	포장검사, 종자검사에 관한 이론 및 실습
보증 및 품질표시	2	보증표시, 품질표시 요령 등

* 종자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 과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교육방법

집합교육으로하되 재난, 감염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4. 교육 계획 수립 등 행정사항

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인원, 교육일정, 교육장소 등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교육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 계획을 자체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국립종자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 대상자에게도 공지하여야 한다.

다.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5] <개 정>

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

1. 공통기준

시설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장비	○ 개별기준의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묘목 및 영양체만을 생산하는 경우와 <u>성형 버섯종균을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u> 에는 개별기준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채소

시설	1)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2) 육종포장(育種圃場): 3,000㎡ 이상일 것
장비	정전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나. 과수

시설	1) 묘목포장(苗木圃場): 7,000㎡ 이상일 것 2) 어미나무: 결실되는 나무 품종당 5그루 이상이 자기 소유일 것. 다만, 종자 관련 검정기관이 병해충이 없음을 인정한 어미나무에서 생산된 접수(接樹)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어미나무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장비	정전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다. 화훼

시설	1) 교배방법의 경우	가)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나) 육종포장: 3,000㎡ 이상일 것
	2) 조직배양방법의 경우	가) 실험실: 100㎡ 이상일 것 나) 현미경(500배 이상일 것): 1대 이상일 것

장비	정전기, 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일 것
----	---------------------------

라. 버섯

시설	1) 실험실: 16.5㎡ 이상일 것 2) 준비실: 49.5㎡ 이상이며,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살균실: 23.0㎡ 이상일 것 4) 냉각실: 16.5㎡ 이상이며, 에어컨시설 또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5) 접종실: 13.2㎡ 이상이며, 무균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시설 및 자외선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6) 배양실: 165.0㎡ 이상이며, 실온을 20~25℃로 조정할 수 있는 항온 장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7) 저장실: 33.0㎡ 이상이며, 실온을 1~5℃로 조절할 수 있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장비	1) 실험실: 현미경(1,000배 이상) 1대, 냉장고(200ℓ 이상) 1대, 소형 고압살균기 1대, 항온기 2대, 건열 살균기 1대 이상일 것 2) 준비실: 입병기 1대, 배합기 1대, 자숙술 1대(양송이 생산자만 해당한다) 3) 살균실: 고압 살균기(압력: 15 ~ 20LPS, 규모: 1회 600병 이상일 것), 보일러(0.4톤 이상일 것)

마. 식량작물(법 제15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만 해당한다)

시설	1)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2) 육종포장: 3,000㎡ 이상일 것
장비	현미경(1,500배 이상일 것), 정전기, 포장기, 발아시험기(감자 제외), 건조기(감자 제외) 및 수분측정기(감자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바. 그 밖의 작물(사료작물 및 특용작물 등)

시설	육종포장(1,000㎡ 이상일 것)
장비	정전기, 포장기, 건조기(인삼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별표5의2] <개 정>

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

1. 공통기준

가.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것

나.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할 것

2. 개별기준

가.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990m ²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가) 환풍기 나) 난방기(난방기가 필요한 작물만 해당한다) 다) 관수장치 3)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출 것 4)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5)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가) 콘크리트 깔기 나) 부직포 깔기 다) 자갈 깔기 라) 보도블록 깔기
<u>노지</u> <u>(파·양파</u> <u>만 해당</u> <u>한다)</u>	1) 면적: 990m ² 이상 2) 관수장치를 갖출 것

나. 식량작물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250m ²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차광장치와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가) 콘크리트 깔기 나) 부직포 깔기 다) 자갈 깔기 라) 보도블록 깔기
----	---

[별표6] <개 정>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이상 위반
<u>가. 삭제</u> 나.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u>다. 삭제</u>	법 제56조제1항제2호	100	300	500	700	1,000

라. 법 제3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	100	300	500	700	1,000
마.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3	100	300	500	700	1,000
바.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4	100	300	500	700	1,000
사. 제3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5	100	300	500	700	1,000
아.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및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3호	100	300	500	700	1,000
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4호	100	300	500	700	1,000
차. 법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	법 제56조제1항제5호	100	300	500	700	1,000

관하지 않은 경우 카. 법 제36조의5제8항제2호	법 제56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400	500
를 위반하여 무병화 인증 신청 및 심사 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타.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판매자의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400	500
파. 법 제3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호	100	150	200	250	300
하.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	법 제56조제3항제2호	100	150	200	250	300
를 위반하여 무병화 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거.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4항제1호	10	30	50	70	100
너.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6조제4항제2호	10	30	50	70	100
더.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및 묘를 진열·보관한 경우	법 제56조제4항제3호	10	30	50	70	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종자관리사는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12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 ----- ----- -----.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u>버섯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u> <u>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u> <u>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업</u> <u>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u> <u>년 이상 종사한 사람(버섯 종</u> <u>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한</u> <u>다)</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2조의2(종자관리사 정기교육)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 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 한다. 1. <u>산림청</u> 2. <u>국립종자원</u>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 <u>인력 양성기관</u> ② <u>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대상</u>
5. (생 략) <u><신 설></u>	

<신 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종자관리사 중 종자업자 또는 관련기관·법인에 취업하여 종자 관리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의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육과목 등 세부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2조의3(무병화인증 대상)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묘목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수(사과·배·포도·복숭아 및 감귤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 종자”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4. (생략)

15.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및 업무정지 명령

16. ~ 23. (생략)

<신설>

24. ~ 35. (생략)

36.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문

37. · 38.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1. ~ 17. (생략)

18.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및 업무정지 명령

19. ~ 23. (생략)

<신설>

<신설>

-----.

1. ~ 14. (현행과 같음)

15. 법 제27조제4항-----

16. ~ 23. (현행과 같음)

23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 수입 신고의 수리

24. ~ 35. (현행과 같음)

36. 법 제50조제2항제2호부터 제2호의3까지에 따른 청문

37. · 38. (현행과 같음)

② -----

-----.

1. ~ 17. (현행과 같음)

18. 법 제27조제4항-----

19. ~ 23. (현행과 같음)

23의2. 법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

23의3.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

<신 설>

른 무병화인증의 취소, 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판매·보급의 정지·금
지 또는 회수·폐기 명령

23의4. 법 제36조의5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
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신
청의 접수, 지정 갱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신 설>

23의5. 법 제36조의5제8항에 따
른 무병화인증기관의 무병화
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의
수리

<신 설>

23의6.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
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
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신 설>

23의7.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
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
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사실
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신 설>

23의8. 법 제36조의8제1항에 따
른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
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
화인증기관이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

<신 설>

24. · 25. (생 략)

<신 설>

<신 설>

26. · 26의2. (생 략)

<신 설>

27. ~ 37. (생 략)

38.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
른 청문

39. ~ 41.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설>

등을 준수하는 지 점검·조사

23의9. 법 제36조의8제2항에 따
른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
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
화인증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 점검·조사

24. · 25. (현행과 같음)

25의2. 제39조의4에 따른 종자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
영

25의3.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종자이력관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26. · 26의2. (현행과 같음)

26의3. 법 제40조의2에 따른 종
자 수입 신고의 수리

27. ~ 37. (현행과 같음)

38. 법 제50조제2항제2호부터
제2호의3까지에 따른 청문

39. ~ 41.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무
병화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탁한다.

1.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

부 칙

<신 설>

<신 설>

<신 설>

에 따른 무병화인증

2. 법 제51조제1항제4의2호부터
제4의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병화인증 신청 및 무병화인
증 갱신 수수료 징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
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
표6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
2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자관리사 정기교육에 관
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
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록한
종자관리사에 대해서도 적용한
다.

**[별표 4의2]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세부사항
(제12조의2 관련)**

1. 교육 이수

가. 교육 주기 : 2년 주기 1회

- 1) 1년의 주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2) 시행령 시행일인 2023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이수 대
상자는 최초 교육을 2024년 1월 1일부
터 2025년 12월 31일 이내에 이수하
여야 한다.
- 3) 시행령 시행일인 2023년 12월 28일 이후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신규 이수 대상자
는 대상자가 된 연도 다음 해부터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5]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

1. 공통기준

시 설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
--------	--

- 나. 이수 시간 : 6시간 이상
- 다. 교육 이수 :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종자관리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라. 결과 통보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교육 완료 1개월 이내에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마. 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강사 수당 등을 포함)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2.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상세내용
종자산업법	2	종자산업법, 종자검사요령 등
종자검사	2	포장검사, 종자검사에 관한 이론 및 실습
보증 및 품질표시	2	보증표시, 품질표시 요령 등

* 종자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 과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교육방법

집합교육으로하되 재난, 감염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4. 교육 계획 수립 등 행정사항

- 가.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인원, 교육일정, 교육장소 등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나. 교육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 계획을 자체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국립종자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 대상자에게도 공지하여야 한다.
- 다.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5]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

1. 공통기준

시 설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
--------	--

	을 수 있다.
장비	○ 개별기준의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묘목 및 영양채만을 생산하는 <u>경우</u> 에는 개별기준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개별기준

(생략)

[별표 5조의2] 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

1. 공통기준

(생략)

2. 개별기준

가.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99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 및 관수장치를 갖춘 것 3)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춘 것 4)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5)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가) 콘크리트 깔기 나) 부직포 깔기 다) 자갈 깔기 라) 보도블록 깔기
----	---

나. 식량작물

(생략)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0조 관련)

1. 공통기준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	----	-----

	을 수 있다.
장비	○ 개별기준의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묘목 및 영양채만을 생산하는 경우 <u>와 성형버섯종균을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u> 에는 개별기준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개별기준

(현행과 같음)

[별표 5조의2] 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

1. 공통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가.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99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 및 관수장치를 갖춘 것 <u>가) 환풍기</u> <u>나) 난방기(난방기가 필요한 작물만 해당한다)</u> <u>다) 관수장치</u> 3)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춘 것 4)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5)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가) 콘크리트 깔기 나) 부직포 깔기 다) 자갈 깔기 라) 보도블록 깔기
<u>노지(파양파만 해당한다)</u>	<u>1) 면적: 990㎡ 이상</u> <u>2) 관수장치를 갖춘 것</u>

나. 식량작물

(현행과 같음)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0조 관련)

1. 공통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	----	-----

	법조문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재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호	100	300	500	700	1,000
나.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	100	300	500	700	1,000
다.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호	100	300	500	700	1,000
라.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및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3호	100	300	500	700	1,000
마.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및 묘를 진열·보관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	100	300	500	700	1,000
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4호	100	300	500	700	1,000
사. 법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5호	100	300	500	700	1,000

	법조문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이상 위반
<u>가. 삭제</u>						
나.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	100	300	500	700	1,000
<u>다. 삭제</u>						
라. 법 제3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	100	300	500	700	1,000
마.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3호의3	100	300	500	700	1,000
바.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4호의4	100	300	500	700	1,000
사. 제3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5	100	300	500	700	1,000
아.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및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3호	100	300	500	700	1,000
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4호	100	300	500	700	1,000
차. 법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	법 제56조제1항제5호	100	300	500	700	1,000

	하지 않은 경우							
카.	법 제36조의5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호	10	20	30	40	50	
타.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판매자의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	10	20	30	40	50	
파.	법 제3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호	10	15	20	25	30	
하.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2호	10	15	20	25	30	
거.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4항제1호	10	30	50	70	10	0
너.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6조제4항제2호	10	30	50	70	10	0
더.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및 묘를 진열·보관한 경우	법 제56조제4항제3호	10	30	50	70	10	0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연 락 처	(044) 201 - 2480